

의안번호	제 1004 호
의 결 연 월 일	2022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2년 3월 8일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00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3. 8.

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
실효되었고,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로
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 없음
- 나. 비용추계서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관계법령: 별첨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, 2017. 7. 26.>

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17. 7. 26.>